



인권실 고문 사무국

2014년 5월 8일

동료 여러분께:

연방법에 따라 주정부와 지역 교육기관들은(이하 "학군")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립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는최근에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실제 또는 인식된 시민권이나 이민 상태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입학 의욕 상실 혹은 입학 단념을 초래하거나 또는 그들의 입학배제로 이어지는 입학 관행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연방법에 위배됩니다. 미국 법무부와 미국 교육부(이하 "본 연방 부서들")에서 발송하는 본 서한은 여러분들이 해당 학군 내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동등한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연방 차원의 의무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본 연방 부서들이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서한은 지난 2011년 5월 6일에 발행된 "동료 여러분께"서한을 갱신한 것이며 해당 5월 6일자 서한과 관련하여 본 연방 부서들이 받은 질의에대한 응답을 제공합니다. 본 서한은 지난 2011년 5월 6일자 서한을 대체합니다.

본 연방 부서들은 1964년 민권법 제4장과 제6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차별 금지법령을 집행합니다. 제4장은 인종, 피부색, 원국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한 공립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연방 법령 42 U.S.C. § 2000c-6. 제6장은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인종, 피부색, 원국적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연방 법령 42 U.S.C. § 2000d. 뿐만 아니라 제6장 규정은 또한 학군들이 인종, 피부색,원국적에 근거한 차별 대우를 받는 효과가 잇거나 특정 인종, 피부색 또는 원국적을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거나 심각하게 손상되는 효과를초래하는 기준 또는 행정 조치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방 규정 28 C.F.R. § 42.104(b)(2) 및 34 C.F.R. § 100.3(b)(2) 참조.

또한 연방 대법원은 Plyler v. Doe, 457 U.S. 202 (1982) 소송에서 주정부는 부/모의미국 내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그 어떤 어린이에게도 기본공교육을 받을 기회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무고한 어린이들"의 공교육받을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무력한 신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는어린이들에게 일생 동안의 고난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기본 교육을받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시민 제도 구조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들이 미국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조차 배제하는 것이다."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Plyler, 457 U.S. 223. Plyler 소송의 판결이 분명히밝힌 것처럼, 학생의(또는 학부모나 보호자) 불법체류 또는 비시민권 상태는 해당학생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는 무관합니다.

이 연방 민권법과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려면, 여러분은 인종, 피부색, 원국적에 근거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에 근거하여 학생이 공립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군은 인종, 피부색, 원국적을 근거하여 학생의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할 목적이나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정보 제출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는 허용되는 학생 입학 관행의 몇 가지 예와함께 학교 입학을 거부하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정보의 종류도 몇 가지 아래에 열거했습니다.

학군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학군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학군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군 내 거주 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artinez v. Bynum, 461 U.S. 321, 328 (1983) 참조. 에를 들어, 학군은 거주를 확인하기위해 전화와 공과금 청구서 또는 임대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오직 학군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만 입학을 허용할 수 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시민권 여부, 이민 상태를 물어보는 것은 학군 내 거주 여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학군은 거주 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목록을 검토하여 요구되는 서류가 불법체류학생이나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거나 취학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차단하거나 좌절시켜서는 안됩니다.

거주 증명 조건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주정부나 학군에서 요구하는 최소 또는 최대 적령 요건을 충족하는데 요구되는 서류는 주와 학군에 따라 다르며, 이 목적을 위하여 관할 구역은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서류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학군은 학생이 출생 증명서가 없거나 외국 출생 증명서와 같은 외국에서 출생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입학 등록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군은 연방 규정상, 어떤 경우에는 주정부 규정상 학생들의 인종과 원국적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는 학군에게 그러한 자료의 수집 및 보고를 요구하지만 학군은 그러한 자료를 학생을 차별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학부모나 보호자가 그러한 자료 요청을 거부한다고 해서 학생의 입학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학군에서 학생의 ID 번호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학 등록 시에학생의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학군은 학생이 자신의(또는 학부모의) 사회보장 번호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학생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5 U.S.C. §552a (note) 참조.<sup>2</sup> 학군이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하기로 선택한 경우, 그러한 정보 제공은 자발적인 의사임을 개인에게 고지하거나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또는 다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어떤 목적에 쓰일 것인가도

<sup>&</sup>lt;sup>1</sup> 홈리스 어린이와 청소년은 입학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거주 증명이나 출생 증명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리스 어린이나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입학에 필요한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학교측은 즉시 입학시켜야 합니다. 42 U.S.C. § 11432(g)(3)(C)(1) *참조*.

<sup>&</sup>lt;sup>2</sup> 연방법은 이러한 요구에서 몇 가지 제한적인 예외를 허용합니다. Pub.L.93-579 § 7(a)(2)(B) *참조*.

## 페이지 3- 동료 여러분께 서한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동일*. 모든 정보 수집과 검토 과정에서, 어떤 요구든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특정 그룹의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1954) 소송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거부 당하면 그 어린이가 성장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493과 동일. 본 연방 부서들은 위에 설명한 연방민권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여러분은 즉각적인 조치로 학군이 학생의 입학 등록에 요구하는 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서류들이 혹시 학생들의 입학 등록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도록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법규 준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정부와 지역 차원의 입학 등록자료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학군이나 학교에서 어느 특정 학생 그룹의 입학 등록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해당 학생 그룹의 취학에 장벽이 있다는 징후일 수 있으므로추가적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함께 요약 정보를 동봉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거나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연방법에 준수하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 (877) 292-3804 또는 education@usdoj.gov를 이용하여 미국 법무부 인권국 교육기회과로 연락하거나, 전화 (800) 421-3481 또는 ocr@ed.gov를 이용하여 미국 교육부 인권실(OCR)로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전화 (202) 401-6000로 미국 교육부 고문 사무국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dcrobcolp01.ed.gov/CFAPPS/OCR/contactus.cfm을 방문하여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OCR 집행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에 관한 정보는 http://www.justice.gov/crt/edo 및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index.html을 방문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교육 기회가 모든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서명/ /서명/

Catherine E. LhamonPhilip H. RosenfeltJocelyn Samuels미국 교육부미국 교육부미국 법무부인권실법률 고문의 기능과 의무인권국사무차장보수행 권한 위임법무차관보 대행부 법률 고문

첨부물